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49

발의연월일: 2022. 11. 21.

발 의 자:유의동・金炳旭・강대식

김학용 • 한기호 • 윤주경

유경준 • 안병길 • 유한홍

김성원 • 박정하 • 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 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제24조제2항),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제24조제3항) 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약관규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제24조제5항제4호)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상임위원이 겸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기업경영 및 소비자 권익"을 "약관규제 및 분쟁조정"으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
	<u>⇔</u>)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	2
함한 9명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u>구성하며,</u>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u>조정원의</u>	③ <u>상임위원이</u>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겸임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	⑤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	
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u>위촉한다.</u>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기업경영 및 소비자</u>	4 <u>약관규제 및 분쟁조</u>
<u>권익</u> 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	<u> 정</u>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